대구예술대학교 교수-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

(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0.03.09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교수-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강신청) ①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있어 소속 전공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가 수강지도를 통해 자녀학생이 부모교수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수강을 해야 할 경우 본부에 수강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조 (사전신고) ①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자녀가 부모교수의 수업을 수강 할 경우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이를 본부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녀 학생이 부모교수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참작한 후 본부부처에서 승인하여 수강을 인정한다.

제4조 (성적의 부여와 관리) ① 출석하지 않았으나 출석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② 시험 및 과제물의 성적부여 원칙에 어긋나는 점수부여를 금지한다.

③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및 안내를 금지한다.

③ 성적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타 수강생과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.

④ 해당 과목 수강생 전체의 성적 부여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최종성적 부여 시 전공주임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전공주임이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시험지 및 과제물, 실기 관련 자료의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 (성적취소)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생의 성적을 취소시킬 수 있다.

① 자녀학생의 수강을 사전에 본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

② 성적부여 후 제4조의 어긋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

③ 기타 성적부여 특혜 사항이 있을 경우

제6조 (징계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에게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① 사전에 해당 학생의 수강내역을 본부에 알리지 않고 해당과목을 수강한 경우

② 자녀학생에게 성적 특혜를 부여한 경우

③ 제4조의 사항을 어기고 성적을 부여한 경우

④ 보존기한 내에 성적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경우

⑤ 위 사항을 제외한 다른 성적부여 특혜 상황이 있을 경우

제7조(학부운영) 학부(예・체능학부제외)로 입학한 학생 일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전공주임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 (신설 2022.08.01.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개정 2020.03.09.)

수 강 신 청 사 전 신 고 서

전공주임

담 당	팀 장	처 장

학번	이름	전공	수강과목	교수자
수강사유 :				

해당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에 수강승인을 요청합니다

년 월 일

교 원 : (인)